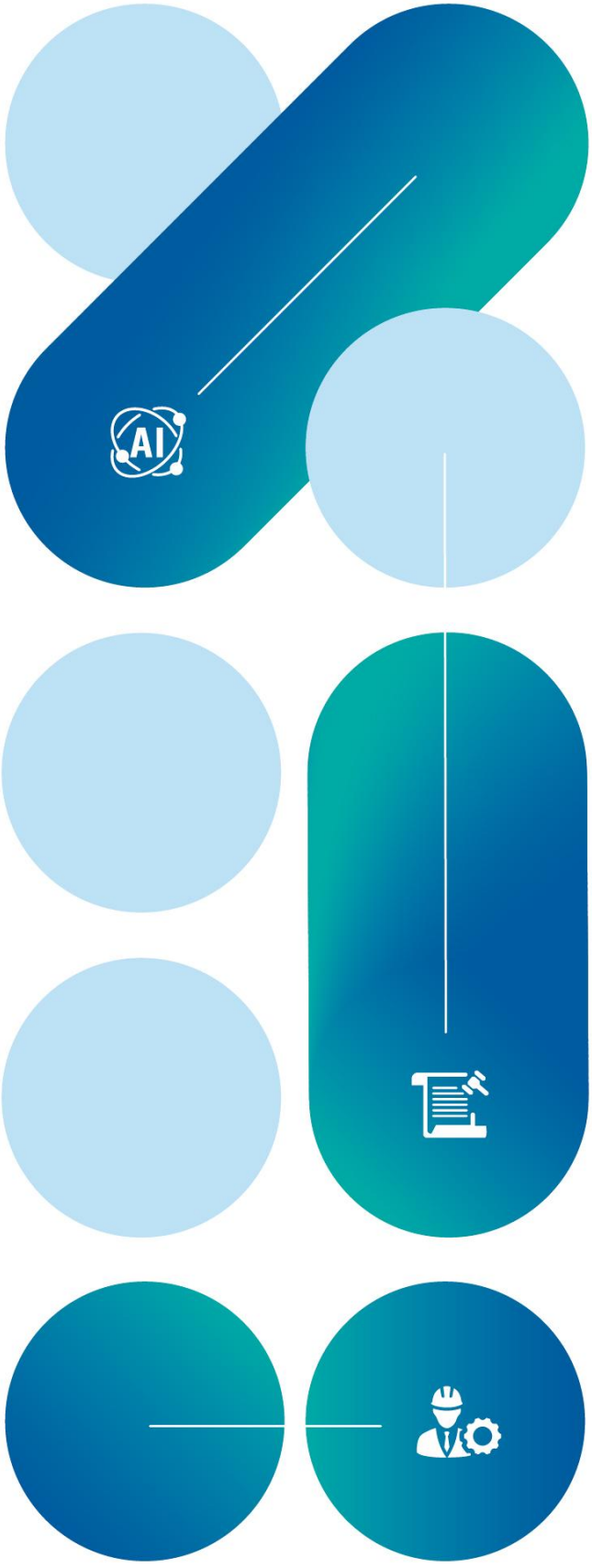
2025 스페셜 리포트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격랑을 넘어서는 슬기로운 경영전략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시동 걸린 이재명 정부 정책,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8 월 13 일 '이재명 정부 5 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위는 이어서 123 대 국정과제와 12 대 중점 전략과제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임명으로 내각이 전체 진용을 갖추면서 이재명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통해 전례 없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인 함의와 시사점을 살피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사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분석과 동향 파악을 토대로 작성한 '이재명 정부 출범, 기업의 대응방향'에 이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들을 심층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精)과 성(誠)을 다해 깊이 있는 분석과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 편집위원회

우병렬 외국변호사(New York)
정규상 외국변호사(New York)
권석천 고문
김형욱 고문
최석림 변호사
정경화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안유진 변호사

Contents

*항목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총론: 이재명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 '이념'에서 '가치'로 3

II. 산업, 성장, 밸류업 8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13

IV. 중대재해·산업안전 20

V. 공정거래와 상생, 온라인플랫폼 25

VI. AI 등 전략산업 육성 32

VII. 국제 통상환경 대응 38

VIII. 규제 재설계 42

IX. 사법기관 개혁 45

X. 조세 및 재정정책 55

I. 총론: 이재명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 '이념'에서 '가치'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이 지났음에도 적지 않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내세워 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전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로 압박하는가 하면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힙니다. 기업으로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이유는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정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 특히 과거의 진보 정부가 '이념'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경영 판단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1. 왜 '이념'과 '가치'의 차이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념과 가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책 입안과 운용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념은 정해진 '레시피'와 같습니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지만 경직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치는 '좋은 재료'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요리합니다. **유연하고 실용적이지만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이념의 '완성된 레시피' 대신 성장, 균형, 통합, 공정, 생명 존중, 지속가능성 등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도 **"어떤 정책 수단이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가?"에 맞춰집니다. 즉, '실용'과 '효율'이란 가치가 정책의 두 바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성장 정책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구사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와의 소통 과정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기업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념을 탈피해 '가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건 **이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가 결합된 변화**입니다.

오랜 보수-진보 대결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이제 이념 논쟁보다 **일자리, 주거, 양극화 해소 등 실용적이고 삶과 직결된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관세전쟁, 고물가, 저성장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는 이념적 교조주의 대신,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가치들은 기업 경영진이 주목해야 할 나침반입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기후위기 대응
-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교

기업 가치가 정부의 핵심 가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비즈니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가치'의 양면성이다: 강력한 리스크 vs 새로운 기회

'가치 중심'의 정부 정책은 분명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념적 대결보다는 합리적 논증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중시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적 성과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치는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좋은 것'이기에, 그 가치에 맞서거나 비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떤 가치를 우선 순위에 놓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이나 '안전' 같은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다의적인 해석으로 오·남용될 경우 **이념보다 더 철저하고 강력한 강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하도급 공정성 강화'라는 가치 아래 특정업계의 관행을 일괄 규제하고 나서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이라는 가치 아래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업 환경은 물론 입찰제도와 예방적 조치, 사후적 제재 방안 등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까지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치를 부단히 가동함으로써 '가치'가 빠질 수 있는 절대성의 함정을 피하려는 노력이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이 먼저 이러한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한다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으며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가치에 주목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면 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치 중심' 정책 대응을 위한 3 대 핵심 전략

이처럼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치 중심'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생존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핵심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첫째, 정부의 '가치-이념' 동향 주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념'에 대한 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지율 등 정치적 변동에 따라 다시 '이념'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념 관성'의 주요 변수 분석:** 주요 정당의 분위기 변화,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표면적 메시지 뒤에 숨겨진 정책 기조의 잠재적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의 선제적 대응:** '이념'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강화, 정책 선회 등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둘째, 기업의 '가치 맵(Value Map)' 재정렬

이제 기업은 단순히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넘어,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이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 **사업 모델의 '사회적 기여도' 진단:** 핵심 사업 모델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고령화 사회를 위한 AI 돌봄 기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등)

-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환경 재해, 인권 침해, 지배구조 문제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와 맞물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3) 셋째, 가치와 데이터를 활용한 능동적인 설득

'가치 중심' 정부는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고 실용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논리와 근거가 타당할 경우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핵심은 '이념'이 아닌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정량적 성과 예측:** 당신의 기술, 투자, 사업 계획이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안정', '공정 성장', '안전', '미래 산업강국' 등 핵심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예측치(예: 연간 일자리 창출 효과 O만 명, 탄소배출 저감량 O톤, 지역경제 파급 효과 O조 원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 **'가치' 기반의 정책 제안:** 단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과 투자 계획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구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빠른 '피드백 루프' 구축:**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예측과 함께, 제안이 거부되거나 수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설득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5. 결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념에서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한 기업만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뒤처지면 경영 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가치 맵'을 점검하고, 정부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공통분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격동의 시대,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업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를 읽으시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II. 산업, 성장, 밸류업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가치와 국민소득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하 2025. 7. 3.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주주이익 보호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라도, 주주의 이익에 반할 경우 또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개정 전 상법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장회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3%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상법 제542조의12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12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최대주주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었고,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신설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 제368조는 의결권 대리행사시 대리권 증명 방식을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하였습니다.

2. 예상되는 개정사항 및 분석

1)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단계적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i)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ii)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 8. 1. 통과되었습니다(의안번호 2205704 수정가결).

집중 투표제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이사 선출 방식입니다(상법 제382조의2). 통상과 같이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면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개의 의결권을 1명의 이사에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이사 선임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해왔으나,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의 방식을 배제할 수 없고,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상법상 1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는 2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출해야 합니다. 기존방식에 따르면 이사를 선임한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나, 분리선출의 경우 이사 선임 단계시부터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로 제한되어,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감사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입법이 추진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기간(6개월, 1년, 3% 미만 2년 등)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의 예외를 두고자 하며 자사주 보유한도를 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소각 의무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자사주 보유공시 대상 확대(발행주식총수의 5% → 1%, 향후 1년간 자사주 처분 및 소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서식 구체화 등)를 통해 상법 개정 전에도 자사주 소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목적은 확실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상장 예정 기업 및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책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사주 처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이에 따라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주주가 직접 안건을 제안하여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주식 저평가에 대한 의견 개진, 주주환원 확대 방식,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임원 보수 적정성 강화 등의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권고'의 효력만 갖는 것으로 입법될 경우 주주가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주주제안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존재할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 경영권 분쟁 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인수 및 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주식을 매수할 때,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가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될 경우, 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에 있어 금전적 부담이 상승하고,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자본·손익거래에 일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수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을 적용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를 일정물량 배정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제도의 변화 기조 확실, 기민한 선제적 대응 필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대응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은 아래와 같이 기업경영에 새로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기업은 이를 대비한 사업계획,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그간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i)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ii)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iii)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2025년 5월 이후 국내증시의 상승세가 계속되어 '허니문 랠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새 정부는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AI 산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이에 맞추어 기업 현황에 맞는 다양한 밸류업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합니다.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적발 역량을 제고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ESG 공시 참여 등 사전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초저평가 기업 정리를 추진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저평가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량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무 상태를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4)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방안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공시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SCI 편입의 전제로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ESG 공시 강화, 영문 공시 의무화 확대, 공매도 및 배당 제도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각 기업은 (i)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조기 정비, (ii) 배당·투자 전략 재설계, (iii) 벤처투자 기회 선점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윤성조
변호사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오명석
변호사
T 02.3404.6587
E myoungseok.oh@bkl.co.kr



안현철
변호사
T 02.3404.6541
E hyunchul.an@bkl.co.kr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지난 2025. 7. 22.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은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노동정책들은 정부와 거대 여당의 추진력에 힘입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하여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일터권리보장기본법 등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전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 입법

1) 주요내용과 전망

2025. 7. 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까지 포함하는 등으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책임의 제한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란봉투법 관련 공약 세부 이행계획 중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 → 2026년 원하청 교섭 등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현장지도'로 보고된 바 있고,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2025. 8. 21.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으로는 노사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협력업체와 관계 설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대비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미 현실화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아닌 경우에까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사내하도급이나 도급·용역·위수탁계약 등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청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 7. 31.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판단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은 사실상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내하도급이나 도급·용역·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원청으로서는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일부를 받아들이더라도 전체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따라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교섭에 응하더라도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돌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데, 기업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까지 대응하여야 하고, 불법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이나 협력업체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고,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 인정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하청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의제별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올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주 4.5 일제 추진

1) 주요 내용과 전망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현행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수반하는 주 4.5일제입니다. 2025년 6월 고용노동부는 주 4.5제 도입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 입법도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4일 자 언론기사에서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통령실 보고 내용으로, 주 4.5일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연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올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 2026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생명 안전 업무, 과로사, 산재 고위험 업무 위주의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 지원, 2028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임기 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되, 먼저 실근로시간 단축에서부터 시작하여 2028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

일단 현 단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시행 및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 진행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당장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에 관한 체계를 주 4.5일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단축 등에 대비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 측에서 선제적으로 교섭요구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올 것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한 소진율 제고,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적절한 활용, AI 활용이나 업무 자동화, 일하는 문화 개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정착을 통한 생산력 향상 도모 및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업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산력과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전략, 업무 프로세스 혁신, 협업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렵게 되고, 결국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와 보상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1) 주요 내용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과 공짜 임금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5. 8. 4. 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 측정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2026년에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비교적 확고하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근로시간의 측정과 관리 체계의 정밀화

먼저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이 들어오면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가 허용하는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전면 금지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일정한 예외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법개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르게 되면 고정OT제를 폐지하여도 될 것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OT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근로자 측에서는 고정OT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산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OT의 성격이나 고정OT 폐지를 둘러싼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가 금지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개별적, 변동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측정·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측정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기업으로서는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등 실근로시간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엄격한 근로시간 파악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마찰이나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시간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4. 정년 연장

1) 주요 내용과 전망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정년연장 TF를 구성해서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2025년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25. 4. 2.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하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8. 4. 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65세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 세대 간 상생 방안 동시 마련'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세대 간 상생 방안에 담길 내용이 주목되는데, 법정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며,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공급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 임금피크제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논의 동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의견 개진 노력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 미칠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문제, 생산성 저하, 노노갈등이나 세대갈등과 같은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년 연장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의 간극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하여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방침은 연내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 올해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지, 입법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도입될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및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1) 주요 내용과 전망

2025. 8. 4. 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제정하고, 2027년에 시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담긴 법안 내용이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약집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신, 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각각의 개별 입법을 통해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위원회 내에 노동자판단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노동자 판단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법원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조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근로자성 추정을 피할 수 있는 요소 구비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취업자가 일터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개별 노동관계법률상 차별 금지 조항에 비추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근로자추정제도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 등과 같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근로자추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플랫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는 계약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으로써 그 사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 설치의 경우 국회 입법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추정제도의 도입시기와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성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상민
변호사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박화진
고문
T 02.3404.0648
E hwajin.park@bkl.co.kr



박은정
변호사
T 02.3404.0598
E eunjung.park@bkl.co.kr



IV. 중대재해·산업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2025. 7. 29. 생중계되었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지시하는 등 연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 공약이 다소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가 관련 법제 개편이나 행정력의 적극적인 투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향후 상당한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사항은 협의체를 통해 더 논의되고 검토된 후 확정될 것이나, 현재 대책은 ① 예방, ② 감독, ③ 처벌, ④ 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각각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① 예방의 측면에서는 '위험 작업 2인1조 근무 민간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강화', '발주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이, ② 감독의 측면에서는 '사법처리 감독 확대', '유사 고위험 사업장 긴급 감독 점검 확대'가 ③ 처벌의 측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수사 강도 및 속도 강화를 통한 경영책임자 실질 처벌'이, ④ 구조 개선의 측면에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고용노동부 2차관 신설', '원청 책임 강화' 등의 정책 변화 방향이 예상됩니다.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전망

1) 2025. 7. 29. 국무회의 논의 사항

2025. 7. 29.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②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 근절,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원청에 부여

③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

④ 원청 책임 강화, 적격수급인 자격 강화

⑤ 공공부문 위험 작업 재하도급 금지

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속한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특약 금지 강화를 대책으로 언급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2025. 8. 9. 대통령실 발표 사항

2025. 8. 8. D 건설사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이후 대통령실은 모든 산업해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한 것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던 △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의 전국 시도청 설치 △ 사망사고 빈발 기업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 공공입찰 제한·영업정지 △ 은행 대출 제한 △ ESG 평가 불이익 등 다각도의 제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전망

연일 고온의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25. 7. 1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규칙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신속히 강화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강화,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근로감독 강화 전망

2025. 6. 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해당 발전사 및 태안화력발전소 내 수급업체에 대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도 높은 통합 근로감독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 7. 6.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에 대한 긴급 감독을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의 불시 감독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위험 징후가 파악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활 방안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재해 발생 시 당해 사업장을 넘어 유사 업종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까지 진행하여 해당 회사에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조치 미흡에 대한 제재조치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예상됩니다.

5. 노동 정책과의 연계 전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빵업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저임금 구조, 심야노동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야간근로 규제를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소위 '노랑봉투법'을 추진함에 따라, 원·하청 공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 도입 가능성 및 하청 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6. 평가, 전망, 대응 전략 – 철저한 예방을 위한 비용과 노력 투입 필수적

이제는 중대재해 발생시 대통령이 바로 보고를 받으며, 중대재해 연속 발생 기업에는 현장 안전점검 명목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심야노동 구조를 개선하도록 만들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도높은 제재를 주문하여 해당 기업 사장이 곧바로 사임하거나 기업 주가가 하락합니다. 중대재해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존속과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결국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비용과 노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 법 체계에 따른 사법조치가 강화되는 것 외에도 근로감독 등 행정조치와 각종 경제적 제재가 종합적으로 가해져 사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영세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급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 필요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법무나 진단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모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으로 현장의 미흡사항들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급/위탁 등 원하청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의 개정, 부당특약 금지의무 강화 등 계약구조나 계약관계와 관련한 규제 강화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하청 근로자들의 참여권 확대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및 개선절차를 정비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신설과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벌칙 조항 신설은 새 정부의 공약 단계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실제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은 현재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임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기업 내 위험성평가의 제도나 절차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작동의 유효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규제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야간근로 규제와 같은 노동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체계 등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것이 산업안전 정책과 연계되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산업안전의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뿐 아니라 일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통합감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서는 평소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유사 업종의 타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 업종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이 늘어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히 근로감독 대응 준비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유사 업종 재해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당 재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이형석
변호사
T 02.3404.0145
E hyungsuk.lee@bkl.co.krsss



최진원
변호사
T 02.3404.0944
E jinwon.choi@bkl.co.kr



김영민
공인노무사
T 02.3404.0693
E youngmin.kim@bkl.co.kr

V. 공정거래와 상생, 온라인플랫폼

1. 기술탈취 근절, 산업안전 등 하도급 규제 강화

1) 주요 정책

국정기획위원회가 2025. 8. 13.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략에 해당하는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 123대 국정과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의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1) 법원의 기술자료 관련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명령 포함),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인,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자료제출명령이 가능하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탈취 피해자가 소제기와 공정위 신고를 병행한 후 소송 절차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자들을 엄벌하겠다는 기조 하에 2025. 7. 9.부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공정거래위원회 참여)를 운영하고 있고, 여당은 2025. 7. 28. '산업재해예방 TF'를 발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함으로써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남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 전략 – 대대적인 변화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대비 필요

'기술탈취 근절' 공약은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원칙은 하도급 정책 및 법 집행의 강경 기조를 상징합니다. 향후 기술 유용이나 탈취가 발생할 경우 각종 평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 조달 배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술탈취와 관련된 다량의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다른 각종 하도급법 위반 자료들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기술자료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준수하고 필수 서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보유하게 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접근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소송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향후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어 비용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원사업자들은 평소 기술자료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 관련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계약을 선제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을 축소하여 책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절차, 하도급 대금 입찰 및 정산 체계를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납품대금연동제 강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비용만 연동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에너지요금 등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납품대금 연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하도급 비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대금 인상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하도급 계약 조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ii)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어 계약하는 행위, (iii) 90일 이내의 단기로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부기업부는 2024년에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탈법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탈법행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1) 주요 정책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공정경제 및 상생을 3대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입점업체와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칭 플랫폼 공정화법 및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통해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가총액 15조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단체협상권 부여 및 단체등록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입점업체들이 플랫폼 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지원하며, 판매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망 이용 계약 제도화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 전략 – 입법 동향 주시하며 사업 관리체계 정비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플랫폼의 지위 남용 방지,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인앱결제 규제 강화, 다크패턴 금지 등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 성장과 경쟁력 유지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칭 플랫폼 공정화법 및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된다면, 이용약관과 계약조건,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국내 매출 신고와 망 이용 계약 공개 의무, 특정 업종의 수수료 상한제 및 산정 기준 공개 등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크패턴 규제 역시 확대되어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5개 유형이 반영되었고,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사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앱결제의 경우 외부결제 차별 금지와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 확보가 의무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결제방식 변화가 주목됩니다. 배달앱 규제는 '사회적 대화기구' 주도의 수수료 개편 논의와 함께 타 업종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 로직, 데이터셋, 우선순위 기준 등을 문서화하고 AI 모델 변경 이력과 영향 분석을 관리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UI/UX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배달앱 규제 사례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사업자는 한국 규제를 반영한 별도 거래조건과 사업방식을 마련하고, 규제당국과의 협의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기획 단계부터 법무·윤리 검토를 반영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갑을 관계 –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1) 주요 정책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며,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고,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입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또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신규 법률 제정안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열위 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 단체의 난립, 대표성 결여, 공급자 또는 플랫폼사업자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거래 구조의 복잡화 및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어 현재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각 법률의 개정안 및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 전략 – 효과적인 소통 체계 구축과 협상 역량 제고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선 공약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상대적 약자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원사업자, 플랫폼사업자는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법률안 제·개정 절차 진행 시, 수범자인 기업들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상권 도입 및 강화는 거래상 열위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거래조건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i) 다수의 단체 난립 가능성, (ii) 협의 요청 권리가 악용되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가능성, (ii) 단체의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어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범자들은 법률안 제·개정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단체협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등이 시행될 경우, 수범자인 기업들은 해당 단체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상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 절차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단체협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내부 처리 절차 및 협상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 내용, 경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수의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협상 상대방 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각 상대방 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체 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기 전에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로서는 상대방과의 상품·서비스 공급단가 설정 방식, 물류비·광고비 결정 방식 등 주요 거래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약 및 제도 개선에 발맞추어 규제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들이 단체협상 절차에 임하면서 기업들의 거래구조 및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 점검 및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면, 중소기업들의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가격 인상 요구나 조건 개선 요구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구매 전략, 공급망 관리,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협상 환경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가맹본부들은 단순히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 창업 정보 공시제가

도입되면 폐업 가맹점사업자 수가 수시로 알려지게 되는데, 폐업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경우 가맹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고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 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될 경우, 인접 가맹점 출점과 관련된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정확하고 영업지역 설정이 요구됩니다.

4.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1) 주요 정책

새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 규제해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정액 부과 방식 대신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의 평가 방법을 참고한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인력·조직을 확대해 대기업의 내부거래, 시세조종,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감시·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 전략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계열사 거래구조 검토 필요

이러한 정책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경영진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변화 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운영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정착되어 주주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로 상생 경제 모델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강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규제에 포함되는 기업들도 계열사 거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부거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정거래법 준수 체계를 강화해 정상가격 산정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확충하고, 전자주주총회와 정기적 소액주주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ESG 경영과 투명한 기업 운영을 통해 장기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VI. AI 등 전략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를 현명하게 잘 쓰는 나라', 'AI로 일 잘하는 정부', '안전한 모두의 AI'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인프라·데이터·인재 확보부터 산업 고도화, 공공 서비스 혁신, 신뢰 기반 구축까지 포괄하는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에 발맞추어 데이터 활용 전략, 기술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방안 마련, AI윤리원칙의 내재화 등 다각도의 준비를 함으로써 AI사업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1.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민간 부문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데이터, 인재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압도적인 컴퓨팅 인프라 확보

정부는 AI 모델 개발과 학습에 필수적인 GPU 1만 장을 2026년까지 우선 구매하고, 총 5만 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학계, 연구계, 중소·벤처기업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인프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처방입니다. 더 나아가,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여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적 AI 연산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2) 고품질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

정부는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해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개선하여,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 환경과 유사한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하여 AI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최고 수준의 AI인재 유치 및 양성

글로벌 AI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AI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해외 AI 인재에게는 'Top-tier 비자'를 신속 발급하고, 세제 감면, 자녀 교육, 주거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국내에서는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기술, 그리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즉, 지능형 로봇의 핵심 기술 R&D에 중점 투자하여 미래 AI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별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을 추진 및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AI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거대언어모델 및 소규모 언어모델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술과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X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 + 클라우드 바우처 + AI 창작 도구·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AI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AI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No.1. AI Hub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도 추진중입니다.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형태(SPC)로 세계 각국의 인재를 영입하여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AI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AI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AI공동투자기금을 마련하겠으며, 협력국 간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4)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과감한 투자와 혁신의 승부수가 요구되는 상황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AI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와 AI인프라의 구축은 이번 정부가 지속적으로 목표 삼아온 AI 3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기반이 될 사항입니다. 정보는 'GPU 5만 장 확보', 'ABCDE 전략산업'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려 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GPU 확보, R&D 투자, 데이터센터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이 없이는 해외 인재에 의존해야 하는 인재 종속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의 현실적 장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데이터의 소유권, 품질, 표준화 문제 및 민감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성을 가지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공 GPU 자원과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하여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R&D 투자와 인재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쟁사 간에도 상호 이익이 되는 데이터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동맹'을 구축하고,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2. AI를 현명하게 잘 쓰는 나라: 전 국민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AI 기술 개발을 넘어, 이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곳곳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AI를 활용한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5대 핵심 산업(ABCDE) 집중 육성

(A) AI Factory & Robot: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한 'AI 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보급을 확산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B) Bio: 신약 및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합니다.

(C) Culture: K-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확산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문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D) Defense & Materials: 방위산업과 항공엔진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에 AI를 활용하여 기술 자립을 가속화합니다.

(E) Energy & Environment: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육성에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2) AI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AI 로봇과 AI 상담사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AI 기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AI 전환에 대비한 고용 안정 지원 방안 마련

AI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여, AI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통해 업종별·직업별 맞춤형 고용 안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재원 확보가 관건

AI 산업 육성 및 진흥 전략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사회적 수용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ABCDE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AI팩토리가 제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AI신약 개발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일상 속 AI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며 기술 수용성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과감한 R&D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AI 로 일 잘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지능형 혁신

정부 운영 방식에 AI를 전면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 AI기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AI CCTV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AI 기술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화재 및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2) AI를 활용한 국방 혁신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여 맞춤형 획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 개선을 통한 AI 신속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AI특화 시범 도시 조성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여 AI 모빌리티·물류·건축·에너지 등 미래 도시서비스 실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정책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input 노력

'AI로 일 잘하는 정부'의 성패는 강력한 실행력과 부처 간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AI 전략이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은 이러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이 기구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구와 최대한 접촉면을 늘리면서 바람직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 안전한 '모두의 AI' 기반 조성: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1) 독자 AI모델 확보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 및 개발 생태계 지원

독자적인 AI모델(K-AI인증)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확산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2) AI오남용 방지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악용한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맞춰 정보보호제도를 재편하여 AI를 이용한 피싱, 스미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3) '진흥'중심의 유연한 법과 제도 마련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AI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 도입을 검토하는 등,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4) 평가, 전망, 대응전략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AI의 책임성 제고

기술 개발과 함께 윤리・법・제도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AI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진흥 후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흥책이 성공하려면 딥페이크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AI윤리・법・제도 및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원칙을 내재화하여, AI 개발 단계부터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허성욱
고문
T 02.3404.0558
E sungwook.hur@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이강혜
변호사
T 02.3404.7454
E kanghye.lee@bkl.co.kr

VII. 국제 통상환경 대응

1. 韓美 관세협상 타결

1)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Section 232에 근거를 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관하여서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 EU과 동등한 수준의 대미 관세를 확보했지만, 한미FTA 덕분에 한국이 지난 13년간 미국시장에서 누려왔던 0% 관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프로젝트 및 핵심광물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세부 합의와 후속조치가 진짜 협상결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의 신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여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 EU 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수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13년간 미국시장에서 누리던 한미FTA 관세 프리미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업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기존의 무역, 투자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투자패키지, 한국의 농산물 개방 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통령 본인이 지정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한국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관세협상 타결과정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패키지를 약속했던 일본, EU 역시 구체적인 투자분야, 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의 품목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그 관세의 절대적 수준에 따라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분야의 국내 규제 역시 향후 협상의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반도체 관세를 공언했고, 미국에 반도체 생산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들에 한해 면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관세 면제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향후 진전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7월말 관세협상타결에서 그 문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투자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는 '미국 힘에 의존하는 통상 질서'에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수용하는 대열에 주도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1세기 패권경쟁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군사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해군력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쫓기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의 MASGA 제안은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더욱 강화하는 토대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지정학적 충돌과 경제안보의 시대에 관세는 경제통상을 뛰어 넘어 산업기술협력 문제이며 외교안보 문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MASGA 가 기업의 수익창출과 미국 조선업의 부활에 도움이 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의 비혁신적인 규제생태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미국 항만간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Jones Act)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점에서 주목을 요합니다. 하원의 에드 케이스 의원(민주·하와이)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공화·괌)이 8월 1일 발의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그것입니다. 미국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시 현행 50% 수입관세 면제, 동맹국 해운사에도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용,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조건부로 미국 연안 운송 투입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조선 협력분야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선 건조와 수리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해운사가 한국 조선소에 건조·개조를 의뢰한 선박도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만큼 MASGA 프로젝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존스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의 전환기에 한국이 국익을 확보하는 획기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2. 통상 New Normal 대응

1) 주요 내용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인 상호관세를 선언한 이후, 100일 기간 동안 협상을 거쳐 8월 7일 미국이 부과하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확정, 발효되었습니다. 국가별 고율 관세를 앞세워 미국은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 협상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a) 영국 포함 3개국은 10% (b) 한국, EU, 일본 포함 20개 국가는 15% (c) 중국·인도를 포함한 46개 국가는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각각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 2024년까지 WTO 회원국에게는 수출국가의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 관세(MFN 관세)를 부과해 오던 미국은 이제 국가별로 적용하는 관세를 차별하는 무역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1947년 출범한 GATT, 이를 확장한 1995년 출범한 WTO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MFN을 GATT/WTO의 설계자인 미국이 스스로 파괴하고 국가별 상호관세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계통상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발 관세융단폭격은 8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MFN 규범에 기반한 GATT/WTO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FTA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장벽에 주요국들 역시 무역장벽과 산업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통상질서는 힘에 근거한 관리무역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의 New Normal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다변화, 경제안보, 경제영토 확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구상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에서의 소개한 공약들을 더 구체화한 것들입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원산지 증명 숙지, 한중FTA와 CPTPP에 관하여 정부와 소통 강화

트럼프 발 New Normal은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들은 아직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거나 거부하는 국가들이 언제 타결할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 받을지, 어떤 투자약속과 구매약속을 할 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는 중국의 경우, 협상의 추이를 정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 중국의 우회수출로 확보와 미국의 차단 조치, 미국의 수출통제 등은 한국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는 "WTO 중심의 신자유주의 무역체제는 미국에게는 산업과 일자리 상실을 가져왔고, 중국에게는 가장 큰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존의 지루한 분쟁해결 절차가 아닌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이행시 신속하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상분쟁에서 국가 간의 이견을 독립적인 기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검사가 되고 판사도 되는 방식의 일방주의 통상체제가 도래했습니다. 합의한 관세협상도 당사국들이 서명한 문서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 주장과 예상되는 분쟁을 예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FTA에서 확보했던 대미 무관세가 사라지고 상호관세 15%, section 232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원산지 증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마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의 경우 4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품목별 원산지 증명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한중FTA의 2단계 협상 시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협상 추진이 중요합니다. 2014년 12월 타결된 한중FTA 1단계 합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FTA ss1단계 협정 발효이후 2년내 투자,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2단계 협상)을 개시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2단계협상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의 안정성,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추가개방이 요구되는 CPTPP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 통상외교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관세협상에서 쌀 시장 추가개방, 소고기 수입 30개월 월령제한 해제를 민감부분으로 구분하고 지켜내는 협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CPTPP 경우 농수산분야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통상분야 New Normal 시대 경제영토 확장의 실효성을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전문가



최병일
고문
T 02.3404.0130
E byungil.choi@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VIII. 규제 재설계

규제 혁파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것인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경제성장과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예외없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았던 주제였지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은 진보 성향의 정당인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진짜 성장'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만들어 내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의 수립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

1. 주요 내용

1)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재설계

핵심 신산업인 AI와 바이오 헬스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인프라 등에 대한 규제를 3~5년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합니다. 나아가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입법 방식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사후 위험관리를 위해 형벌이 아닌 민사적 책임의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를 병행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8개 분야로 분절화된 운영을 개편하여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과제와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인한 장기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특례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전략기획형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특례기업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실증기회를 보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전에 규제법령 정비 여부를 판단하여 법령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며, 정비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례기간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여 특례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대규모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함께 정부의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특구를 설계하여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정부가 규제 특례안과 정책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여 승인하면 필요한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야별 세부 과제

현재 정부 내의 규제 관리 주무부서에서는 영상정보 수집 및 비식별처리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원본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AI), 의약품 해외 제조시 위탁 허용 대상 확대(바이오), 게임물 및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이양하는 등 등급분류제도 개선(콘텐츠·문화), 드론 기술 국산화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산업 규제 개선(방위·우주항공),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너지), 휴머노이드 산업 활용 제한 완화(로봇) 등 성장동력이 될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치열하게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이다

본 법무법인이 파악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강력할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시각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은 재정 지출의 대규모 증대를 수반하지만 자금의 원천인 세수의 증대와 국채 발행은 엄중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동원하지 않고 경제와 산업을 도약시킬 방안의 하나로서 규제를 혁신하여 경제 주체에게 창의와 자율의 운동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상법 등 밸류업 관련 정책, 노동 관련법, 안전, 환경 분야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입법과 정책이 실행되었거나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신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와 사업 영역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진행될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기업별로 혹은 사업자 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에 대한 대응 조직을 보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외의 전문가 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슈별로 치밀한 논리와 근거를 준비하고,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충분한 기회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안전 관련 위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혁신이 장벽에 부딪힐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사례의 분석 등을 포함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도입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규제 연구기관 및 입법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정경화
변호사
T 02.3404.0457
E kyeonghwa.jeong@bkl.co.kr



경기동
변호사
T 02.3404.5852
E kidong.kyeong@bkl.co.kr



IX. 사법기관 개혁

검찰 개혁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통제이며 이 양대 권한의 분리를 축으로 하여 수사권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소권에 대하여는 사법통제를 실질화 하겠다는 점을 천명해 왔습니다. 여당은 최근 당대표 선출 직후 2025. 8. 6.에 검찰개혁특위('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의원)를 출범하고 수사-기소의 분리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4개 '패키지법안'(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은 이미 대선 직후인 2025. 6. 11.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심의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 부처간 협의 후 조만간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5. 8. 13.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하였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과제는 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토록 하되, 양 기관 간 상호 파견, 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 과제는 법무부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함과 아울러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 국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의 지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문민화', '법무부 탈검찰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시책의 일환이므로 관련 규정 정비와 인선을 통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수사, 기소 분리' 관련 각 법안들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각 신설법안의 주요 내용

위 법안들에 따르면 개혁 방안의 요지는 기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 보유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1949년 이래 70여년 유지되어 온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며 기존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관장	공소청장 (헌법 89 조 제 16 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함) - 차관 대우, 임기 2년, 중임 불가, 정년 65세, 인사청문회 거침 - 공소청장후보추천위 운영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 후보 중 2명 이상을 추천)	중대범죄수사청장 - 차관 대우 등 신분 관련 규정 좌동 - 중수청장후보추천위 운영 (행안부장관이 위원장, 행안부차관, 공수처장, 경찰청장 +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후보 중 2명을 추천)
주요 업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영장 청구 - 재판집행을 지휘, 감독 - 다른 법률에 따른 권한 사항	- 중대범죄(내란·외환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 수사 -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 등도 수사 대상임 * 중대범죄 불송치 결정 시 해당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함

구성		- 중수청, 지역중수청 - 중수청장, 지역중수청장, 차장, 수사관(1급~7급 특정직 공무원), 중수청 직원으로 구성 - 수사관 정년 60세
자격 및 공직임용 제한	- 기존 검찰청법 규정과 거의 동일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 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 종사자, 조사실무 5 년 이상 경력자 등 자격 요함 -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 내에 검사 임용 불가 - 중수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내에 헌재재판관, 검찰총장, 일부 정무직 공무원 등 임용 불가
관련 위원회	- 공소심의위원회 : 기소/불기소/영장청구/검사처분의 적정성 등 심의(9명 이내, 외부위원 과반)	- 수사심의위원회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외부위원 과반, 3개월 이내 심의 완료해야)
불복 절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이 담당 (현행은 고등검찰청이 담당)	-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지역중수청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 수사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경과규정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 기존 검찰청법 상 검사의 업무 중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직무는 담당 기관에서 승계 - 기존의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공소청 검사 및 직원으로 봄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 기존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중수청법 해당 사무는 중수청이 승계

2.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주요 내용

개혁법안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경합 등 수사권 체계의 혼란 발생, 책임소재 불분명 등 우려에 대처하고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에 대한 통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세부 내용
소속	**국무총리 산하**	
위원 구성	- 위원장(상임)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 위원 임기 2년(1차 연임 가능) -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각 1명씩 추천)	- 위원 11명 세부 구성: 국회선출 4명(상임위원 2명), 대통령 지명 4명 (상임위원 1명), 국수위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3명
조직	- 상임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3~5명) - 각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 수사민주화 소위원회는 필수 설치하고 산하에 국민주권 전문위원회, 수사정보공개 전문위원회를 둠
적용 대상	-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	

주요 업무	-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관련 수사심의신청의 처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 감독 -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 요구 -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수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선 -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 조정 등	
이의신청 등 업무 처리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둠 - 고소인 등은 수사기관이 불송치 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수사기관에 재수사토록 조치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 또는 검사에 송치 명령 가능 - 이의신청 각하/기각 시 재정신청 가능

3. 평가, 전망, 대응전략

1) 수사의 주체/절차 다변화에 따른 대응 패러다임 변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전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고, 경찰,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별/수사단계별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비록 폐지되나 기소권, 영장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간접적' 통제는 불가피하므로, 수사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소청 및

유관기관 등의 방침과 역할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긴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대규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송치, 일부 계속 수사, 일부 불송치, 관할 없는 부분에 대한 타기관 이첩 등의 다양한 처분을 할 경우, 이러한 처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슈 발생합니다. 대상기관이 대폭 늘고 나아가 공소청에 송치된 부분이 일부 기소, 일부 계속 검토, 일부 불기소 처분되면 법원 및 공소청 대응(항고)이 추가되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시 국가수사위원회로까지 전개되어 동시에 법원, 공소청, 지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타 수사기관, 국가수사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주체가 다변화하고 관련 절차가 복잡다기화함에 따른 여러 변수와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2) 다수 수사기관의 병립과 관할 중첩에 따른 수사권경합 및 중복수사 리스크 대처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객관적인 수사 총량이 증가하고 각 수사기관의 업무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 경합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 제도하에서도 금융위(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을 통해 검찰 전문부서 수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첩보를 명분으로 인지수사/압수수색하는 사건, 국세청이 범칙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배임 등 혐의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 경찰과 세관의 중복 수사 등 여러 경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정 기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경합 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경찰 등 주요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노동청, 세관 등 기존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오던 특별사법경찰이 사실상 각각 독립적인 수사 조직으로 분립함에 따라 수사권 경합은 다차원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사권 경합에 따른 중복수사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부분도 수사대상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의 위험이 다분한 절차입니다.

수사권 경합 등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나 위원회 조직 속성 상 신속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미흡하여 중복수사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복잡다기한 불복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 대응 필요

현재 개혁법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뿐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공소청에 항고하여도 상급기관인 공소청 역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 심사 내지 사건경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한계상 보완수사를 통한 권리구제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사미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 등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더라도 수사전문가인 검사가 검토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 대신 각 수사기관의 자체 '수사심의위원회' 및 국가수사위원회의 '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위원회 절차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신속한 보완수사/재수사 등을 통한 권리구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조직의 비효율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는 상임위원 4명은 국회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주요 사안에 대한 정무적 통제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치밀하고 전문적 법리 검토와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복잡 다기해짐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각 상황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개혁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검찰, 언론 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을 3대 개혁과제에 포함시키고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법원 관련 주요 정책

1) 대법관 증원 추진

2025년 5월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6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시행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재판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취지로 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과제"로 언급하였고,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재판소원 추진

2025. 7. 17.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2025. 7. 28. 현행 법관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장이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오래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복수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5) 변호사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변호사비밀유지권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사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1)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응 필요

상고심에서의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할 경우 다수 대법관의 취임과 퇴임이 단기간 내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임기와 대법관 다수의 구성이 연동되게 되어 삼권분립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증원의 범위와 속도는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수가 증가하고 구성이 다양해질 경우 판례가 과거에 비해 더 쉽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판사 정원의 증원과 다양성 제고도 함께 추진될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증가할 수 있고 재판부별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절차 전반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 방안은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각계 각층의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평가기준과 평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관평가위원회의 설치는 법관, 법원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한 자료제출 부담 증대 및 형사 리스크 감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하게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쟁점에 대한 사실심리가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반면, 피소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므로 기업의 민감한 내부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제조물책임, 환경 소송 등에서 기업의 민감한 내부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 남소(濫訴)를 당할 우려도 있으며,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을 증거확보를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았으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형사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른 배임죄 확대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배임죄를 완화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제도의 도입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살펴 업무문서의 생산과 보존 등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법적 검토 가능해질 듯

변호사비밀유지권이 법률로 보장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되고 소송절차에서 공개될 염려가 없게 되어 기업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다양한 국면에서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면 공개될 염려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현안에 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긴밀하고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정수봉
변호사
T 02.3404.0199
E soobong.jung@bkl.co.kr



권오석
변호사
T 02.3404.6580
E ohseok.kwon@bkl.co.kr



이성원
변호사
T 02.3404.7492
E seongwon.lee@bkl.co.kr

X. 조세 및 재정정책

이재명 정부는 2025. 7. 31.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i)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ii)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iii)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복지 강국' 구상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노선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1. 미래전략산업 지원

1) 주요 정책 내용

-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면서 그 세부기술로 생성형 AI 기술 등 5개를 추가하였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 **해운·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은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미래형 운송이동'의 세부기술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선박),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자동차)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부 세부기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인공지능형 자율운항(선박) 및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인 '방위산업'의 세부기술에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에도 관련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 **K-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은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i)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ii) 기존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2028. 12. 31.), (iii)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2028. 12. 31.).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인공지능 분야 등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각 대상별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공제율	2~25%	20~40%	30~50%
투자세액공제율	1~10%	3~12%	15~30%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지 않아,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부족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인공지능 분야를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7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의 분야 중 하나로 신설하는 것 외에도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미래형운송·이동수단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인 방위산업의 세부기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세제개편안은 K-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및 연장함으로써,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1) 주요 정책 내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2025년 세제개편안은 상시근로자 증가할 경우 기업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 ~ 1,550만원 세액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편 내용
공제구조	고용 감소 시 추징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 재설계
공제요건	최소 고용증가 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만 공제 적용
사후관리	현행은 고용 일부 감소 시 고용 감소분에 대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현행은 (i)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폐쇄하거나 (ii) 해외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시 소득세·법인세·관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다음과 같이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제공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2028. 12. 31.)

구분	개편 내용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계속 영위
과세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2025년 세제개편안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제공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고용 및 기업의 국내 복귀 노력 유도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제도의 각 요건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고용을 증가하고 국내로 복귀하려는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현물출자는 기업구조조정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의미에서는 단지 소유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 세법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으면서 예외적으로 경제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이연을 제공하는 등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위 방법에 대한 조세특례는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1) 주요 정책 내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였습니다.

구분	개편 내용
적용요건 (①&②)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상장법인)
적용세율	~2천만원 : 14% / 2천만원~3억원 : 20% / 3억원~ : 35%
적용기간	2026 ~ 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개선**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기업소득 대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등 합계액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

기업소득비율	개편 내용
투자포함형	(현행) 60~80% (개정안) 65~85%
투자제외형	(현행) 10~20% (개정안) 20~40%

- **벤처투자 세제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은 벤처투자 지원을 위해 (i)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3→5%)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2028. 12. 31.), (ii)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2028. 12. 31.), (iii)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기대 효과가 미미한 수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고, 실제 2025년 세제개편안에도 해당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은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최고세율(25%)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므로,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은 여전히 기존 종합소득 과세제도의 최고세율(45%)보다 10%p 낮고, 기존 제도에서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한 실효최고세율(약 39.5%)과 비교하여도 약 4.5%p 낮으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주들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이 배당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도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장법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는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별개로 기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지역성장 지원

1) 주요 정책 내용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2028. 12. 31.)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세제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발효과 미미할 듯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지역성장 세제지원은 현행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및 연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신설함으로써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해당 지역 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지역 성장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지역성장 세제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함께 지방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1) 주요 정책 내용

-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2025년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상향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으며,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교육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현행: 0.5% → 개정안: 과세표준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법인세율 인상안]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 2억 원	9%	**10%**
2억 원 ~ 200억 원	19%	**20%**
200억 원 ~ 3,000억 원	21%	**22%**
3,000억 원 ~	24%	**25%**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안**
코스피 **(농특세)**	0.10 0.15	0.08 0.15	0.08 0.15	**0.05** **0.15**	0.03 0.15	0 0.15	**0.05** **0.15**
코스닥	0.25	0.23	0.23	**0.20**	0.18	0.15	**0.20**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

 2025년 세제개편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대주주등*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를,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제외)를 의미합니다.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유지**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상속세 전환이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차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평가, 전망, 대응전략 – 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대에 중점

2025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의 경우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교육세율을 인상하였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도 해외주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세안은 최근 수년간 연속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일반 국민의 증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는 법인세법에는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비과세 한도(취득가액 한도)를 소득세법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는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법무부의 견해에 따르면 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두지 않은 법인은 2025년 중에는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세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유철형
변호사
T 02.3404.0154
E cheolhyung.yu@bkl.co.kr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박창수
변호사
T 02.3404.7659
E changsoo.park@bkl.co.kr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